

2021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자료

[심의]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및 2개 규정 개정(안)

[보고] - 16개 규정 개정(안)

[자문] - 2021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 일 시 : 2021. 11. 30(화) 14:00

□ 장 소 : 광운대학교 대회의실

□ 주 관 : 광운대학교 기획처

2021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상정 안건

안 건		page	상정부서	비고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1	대학원	심의
2.	경영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7	경영대학원	
3.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25	교육대학원	
4.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28	교육지원팀	심의
5.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48		
6.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61		
7.	학생정원 조정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64		
8.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68	총무팀	
9.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76	정보운영팀	
10.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84	국제교류팀	
11.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 개정(안)	98		
12.	인터내셔널하우스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104		
13.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111	공학혁신센터	
1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123		
15.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131		
16.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내규 개정(안)	140	정보과학교육원	
17.	광운대학교 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개정(안)	169	예비군연대	
18.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172	기획평가팀	
19.	2021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평가팀	자문
20.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심의

2021학년도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자료

1. 일 시 : 2021년 11월 30일(화) 14:00

2. 장 소 : 화도관 2층 대회의실

3. 대학평의위원회 의원

의 장 : 김진곤

부의장 : 천성오

의 원 : 이건영, 박수원, 이경훈, 신상진, 김태훈, 김민수, 고민석, 김준혁, 정재영

4. 안건

가. 규정 개정(안)

- 1) 대학원 통합학칙 개정(안) - 심의
- 2) 경영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3)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내규 개정(안)
- 4) 광운대학교 학칙 개정(안) - 심의
- 5)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6) 수업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7) 학생정원 조정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 8) 직원보수 규정 개정(안)
- 9) 사무분장 규정 개정(안)
- 10) 국제기관 교환학생에 대한 내규 개정(안)
- 11) 국제기관 단기연수 및 학점인정에 대한 내규 개정(안)
- 12) 인터내셔널하우스 운영에 관한 내규 개정(안)
- 13) 전자정보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 14)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 15) 공과대학 공학프로그램 운영 규정 개정(안)
- 16) 광운대학교 학점은행제 운영내규 개정(안)
- 17) 광운대학교 방위협의회 운영 규칙 개정(안)
- 18) 공간관리 규정 개정(안)

나. 2021학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1) 관련 규정

대학평의회 규정	
제 4 장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정 2008. 1. 15>	
제15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① 개방이사와 감사 1인을 추천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정수는 9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3.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2인
	③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08. 1. 15>
제15조의 2(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	① 추천위원회는 법인 정관 제24조의 2(개방이사의 선임)에 의거, 법인으로부터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의뢰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② 법인 정관 제25조에 의거, 추천위원회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중 1인을 단수 추천한다.<조번호변경 2008. 1. 15><개정 2008. 1. 15>
	③ 개방이사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이 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안에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신설 2008. 1. 15>
제16조(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의 선출)	평의회는 정관 제24조의 3(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의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총 9명 중 대학평의회에 배정된 인원 3명을 평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한다.<개정 2008. 1. 15>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규정	
	제정일 : 2008. 1.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광운학원 정관 제24조의 3 및 광운대학교 대학평의회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대학평의회에 두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4인
	2.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3.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는 자 2인
	② 제①항의 각 추천 주체는 대학평의회 의장이 위원 추천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추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2) 진행 경과 보고 및 진행 일정(안)

1. 2021. 11. 17(수) : 광운학원 개방감사 선임대상자 추천 요청 공문 접수

구 분	임기만료 예정인원	선임대상자 추천요청 인원	임 기
개방감사	1명	1명(단수 추천)	교육부 승인일로부터 3년간

2. 2021. 11. 18(목) : 제11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 광운학원, 각 급 학교

3. 2021. 11. 30(화) : 대학평의회 추천 3인 구성 및 추천 위원 명단 제출

4. 2021. 12. 1(수) : 제11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3) 대학평의회 추천(3인 구성) 구성(안)

구분	성명	비고
대학평의회 추천		

※ 과거 추천방식 : 각 주체별로 1인씩 총 3명을 추천 후에 동의 구하는 방식

5. 기타 안내사항

가. 제6차 대학평의회 회의 일정 변경 : 2022.01.11.(화) -> 2022.01.20.(목) 14시

- 사유 : 2021학년도 2차 추경 및 2022학년도 본 예산(안) 일정상 조정 요청

붙임 : 1. 규정입안서,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전문 각 1부. 끝.